

## 4-1. 정관 개정 1: 제1장 제2조, 제3조, 제4장 제18조, 제7장 제36조, 제8장 제37조, 제38조

1) 주문사항: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목적과 회원 권한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또한 조직 확대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제8장 보칙 제37조(네트워크 해산), 제38조(정관 변경)를 개정한다.

### 가.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개정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 나. 제1장 총칙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2항 개정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② 네트워크에는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제1항 3호, 제2항, 제8장 보칙 제37조(네트워크 해산) 제1항, 제38조(정관 변경) 개정:

정회원 권한의 명기(재적 회원 ⇒ 재적 정회원)

####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네트워크 해산) ①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제2항, 제3항 개정: 사무총장 ⇒ 사무국장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참고: 현행 정관과 비교

현행	변경
<p>제1장 총 칙</p> <p>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현행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점을 개선, 보완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제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삶의 조건을 정치공동체가 보장하고, 국민의 능동적/긍정적/실질적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p>

현행	변경
<p>제1장 총 칙</p>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p> <p>① 네트워크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104번길8 701호에 둔다.</p> <p>② 네트워크에는 <u>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군·구 단위의</u> 지역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p>	<p>제1장 총칙</p>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p> <p>① 네트워크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104번길8 701호에 둔다.</p> <p>② 네트워크에는 <u>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의</u> 지역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p>
<p>제4장 총 회</p> <p>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2.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5. 4. 18.]</p> <p>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p>	<p>제4장 총회</p> <p>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2.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5. 4. 18.]</p> <p>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p>
<p>제8장 보 칙</p> <p>제37조(네트워크 해산) ①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개정 2015. 4. 18.]</p> <p>제38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4. 18.]</p>	<p>제8장 보 칙</p> <p>제37조(네트워크 해산) ①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개정 2015. 4. 18.]</p> <p>제38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현행	변경
<p>제7장 사무부서</p> <p>제36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에 <u>사무총장</u>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u>사무총장</u>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p>	<p>제7장 사무부서</p> <p>제36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에 <u>사무국장</u>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u>사무국장</u>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p>

## 4-2. 정관 개정 2: 제4장 총회 제17조, 제20조

1) 주문사항: 정기총회의 의결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아래와 같이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제20조(의결 정족수)를 개정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초안·일사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의 안건초안 숙의기간을 거친 후에 의결안을 확정,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숙의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시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재석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 ② 정기총회 안건은 회의 전 1~4일의 온라인 의결을 포함하여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임시총회 안건은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개정 취지

우리의 정기총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회원들이 모여 연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회의이고, 재석 정회원 과반의 출석이라는 일반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다만, 회원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 안건과 관련한 제반 권한을 총회 의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총회 소집 및 의결’ 방식이 총회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회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총회 현장 참석자의 수는 늘지 않고 있다(2018년 정기총회의 경우 30명 안팎 참석). 그리고, 재석 회원의 다수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제반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은 회원들의 충분한 안건 숙지와 의사 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지난해의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의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총회 과정 자체가 형식적 의사결정에 그치고 있어서 회원들의 참가 동기부여가 약했다. (총회의 무료함을 감안해서 ‘토론회’를 부대행사로 잡기도 했으나, 그 행사의 동기부여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본소득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연간 사업의 평가와 계획을 내실 있게 의결하기 위해, 정기총회의 소집과 의결 방식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자 한다.

- 1) 정기총회 의결을 온라인 의결과 현장 의결, 2가지 방식으로 한다. 총회 직전 1~4일 동안의 온라인 의결과 총회 현장 의결을 합산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 2) 정기총회 의결 안건은 안건초안 통지(총회 30일 전), 숙의 및 의견 취합(총회 16일 전), 안건 확정 및 통지(총회 10일 전)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단, 각 과정의 해당 일이 휴무일일 경우, 익일에 시행한다.

예시) 2월 16일 정기총회의 경우

1월 15일까지	1월 15~29일	2월 6일까지	2월 12~15일	2월 16일
안건초안 통지	숙의 및 의견취합	안건 확정 및 통지	온라인 의결	총회 현장 의결 및 합산 최종의결

### 3) 참고: 현행 정관과 비교

현행	변경
<p>제4장 총 회</p> <p>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p> <p>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가 회의 안전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장 총 회</p> <p>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p> <p>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③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전초안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의 안전초안 숙의기간을 거친 후에 의결 안전을 확정,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숙의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에 따른다.</p> <p>2.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p>
<p>제20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석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석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시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재석 정회원으로 간주한다.</p> <p>② 정기총회 안건은 회의 전 1~4일의 온라인 의결을 포함하여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임시총회 안건은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